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41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1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7일

### 2. 제안이유

- 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정부조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수정하는 등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안보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자문에 응하는 “안보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나.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국가정보원 제2국장”과 “서울지구기무부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과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수정(안 제3조

제3항)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그 밖에 맞춤형,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8.11.1. ~ 11.21.)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보정책 자문과 대외협력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자문기관인 ‘안보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과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안보정책자문단 설치(안 제11조 신설)

- 비상기획관은 2014년 12월부터 시장방침<sup>1)</sup>에 따라 자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서울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해당 자문기관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로써 법령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 왔는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보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본 자문단을 두도록 규정하여, 그 취지 상 자문단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의 성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통합방위협의회와

1) 서울특별시 시장 방침 제331호,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민방위 담당관-17720(2014.12.4.)

자문단의 위원 구성이 서로 상이한바, 각각 별개의 위원회로 볼 수 있을 것임.

※ 「2018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20쪽,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됨.

○ 신규 위원회로서의 자문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 제11조의 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 하였음에도 본 개정안에는 일몰제 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는바, 본 자문단이 상설 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둘째,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 자문단(2기)의 위원 16명 전원이 영관급 이상 군 출신자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비록 여성정책담당관으로부터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원안동의<sup>2)</sup>를 받았다고는 하나, 향후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9년부터 운영되는 제3기 위원 구성안에는 여성 1인 위촉 예정(육군 준장 출신).

2) 2018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8892(2018.12.31.))

### 「양성평등기본법」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1.>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셋째,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자문단 위촉 위원의 자격으로 ‘국가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를 통합방위협의회의장(서울특별시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주민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단 구성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2기) 위원은 모두 영관급 이상 군 출신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바,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위원 구성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가안보 전문가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 공개적 절차에 의한 위원의 위촉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9년부터 운영되는 제3기 위원 구성안에는 여성 1인(육군 준장 출신) 위촉 예정.

※ (참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면서, 제14호에서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본 개정안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에 관하여는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였다고 하나, 자문단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소속의 별도 위원회로서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자격기준을 추가(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 「서울시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 (2017.12.15. 서울협치위원회)

하나, 각종 위원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등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시민위원 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

하나,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해 성별·세대별·지역별 등 고른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사회적 소수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

##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안 6조, 안 7조)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 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중 본 조례에서 누락되어 온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 「2018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위원회 설치 시 고려사항 중 필수규정 명시 여부(14쪽)

1.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회 존속 기한(5년이내 범위로 명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①항 및 ②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만, 안 제7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 하면서, 그 대상을 법령에서 예시한 당연직 위원 외의, 지역방위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에 한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자 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당연직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집행부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대한 위촉 등 사항은 「통합방위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를 들어 해당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을 제한함으로써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본 조례 제3조 제3항 제17호에서의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에 한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통합방위법」에서는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는 지역협의회 위원을 예시하면서, 예시 외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바,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안을 서울특별시 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에 한하도록 의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제3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④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호 내지 13호는 해당 지역의 군부대장 등 당연직 위원 예시 사항임)

-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7.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직위 및 자구 수정(안 제1조, 안 제3조)**

-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바, 안 제1조 및 안 제3조는 정부조직 개편 사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시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개정조례안 정비 사항>**

조문	현 행	개정안	비 고
1조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데	띄어쓰기(알법)
3조 본문	호에 정한 자로	호에 정한 사람으로	일본식 문구 정비(알법)
3조 2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오자 수정
3조 6호	국가정보원 제2국장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 찾은 기관 직제 변경에 따른 포괄적 규정
3조 8,9,10호	서울시	서울특별시	정식 기관명 사용
3조 15호	서울지구기무부대장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명칭 변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정)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현황)

현 행	개 정 안	제정근거 (개정근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		통합방위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교육감		통합방위법시행령
수도방위사령관		통합방위법시행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통합방위법시행령
서울지방 경찰청장		통합방위법시행령
국가정보원 제2국장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통합방위법시행령 (국가정보원법)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통합방위법시행령
서울지방병무청장		통합방위법시행령
서울지방보훈청장		통합방위법시행령
서울지방교정청장		통합방위법시행령
서울지역기무부대장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통합방위법시행령 (국군조직법)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통합방위법시행령
서울지방국세청장		조례제정시 포함 (1998. 4. 6)
서울지방우정청장		조례제정시 포함 (1998. 4. 6)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조례개정시 포함 (16.3.24)
서울시 비상기획관		조례개정시 포함 (16.3.24)